

신 탁 계 약 서 변 경 비 교 표

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·② (생 략)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 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 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 1.~3. (생 략) <신 설>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 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 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 1.~3. (현행과 같음) <u>4. 트리스톤 밸류웨이 40 증권자투자신탁 [채권혼합]</u>
<신 설>	<u>부 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</u>